

○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764명 ⇒ 748명 ($\Delta 16$ 명)

(직급별 내역 : 5급△1명, 6급△4명, 7급△5명, 8급△2명, 9급△4명)

▷ 지도직 : 32명 ⇒ 31명 ($\Delta 1$ 명 / 지도사△1)

▷ 기능직 : 184명 ⇒ 180명 ($\Delta 4$ 명)

(직급별 내역 : 8급 △1명, 9급 △1명, 10급△2명)

※ 별정직/연구직은 변동없음

※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보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법적 검토 】

- 본 조례안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부수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8월 2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행정적 검토 】

-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를 999명에서 21명 감축한 978명으로 21명 감축한바, 시·군 조직개편 지침(행정안전부, 2008. 5. 6)에는 감축목표가 3.6%인 36명 이었으나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파견 등 인력운용을 감안하여 금회21명 감축하였음.
- 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어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함.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축목표가 3.6%인 36명인 것에 대해서 금회 21명 감축하였는데 행안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빙는 불이익은 없는지? (양순경 위원)
 - :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침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1인당 5880만원씩 수대로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을 정할 때 정한다고 되어 있음.
-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감축인원을 더 줄일수는 없는 것인지? (양순경 위원)
 - : 행안부에서는 시군의 특성을 특별하게 인정을 안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우리시가 감축인원을 현재 21명으로 한 근거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 총액인건비제 기준이 978명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자자체와 비교랄지 우리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인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였음.

- 직급별 정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직렬별로 정원조정하실 때 소수
직렬까지 배려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왔는지? 소수
직렬에 대한 6급정원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인지?(박성하 의원)
: 검토하겠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